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개정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운임·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법률은 결제대행·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비식별화된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출 대상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해당 자료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제출주기 및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제21조의2 신설)

2) 법률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제출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화재·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요청된 형태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제21조의3 신설)

3) 법률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 40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기준을 적용하되, 최초 위반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 40시간제 위반 시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고, 1차 위반은 사업장 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결제자료 등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택시 운행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1. 결제승인일시
2. 결제금액(택시운임 및 부가서비스 요금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3.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축, 운영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제출 주기, 전송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운임·요금 결제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

한 사유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정보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요청받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요청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이 금지된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를 “범위(제2호가목 1회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4분의 3의 범위)”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가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사업장 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	500	1,000	1,000
--	---------------	-----	-------	-------

별표 3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 항 제3호	200	500	1,000
--	-------------------	-----	-----	-------

별표 3 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를 “법 제23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같은 란의 법 제23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2 항 제1호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제2호 가목 1회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위반행위가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사업장 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u>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신설)</u>	법 제23조제1항 제1호	500	1,000	1,000
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현행)	법 제23조제1항 제2호	500	1,000	1,000
다. <u>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신설)</u>	법 제23조제1항 제3호	200	500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택시 운행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u> <u>1. 결제승인일시</u> <u>2. 결제금액(택시운임 및 부가서비스 요금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u> <u>3.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u> <u>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축, 운영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자료의 제출 주기, 전송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제21조의3(운임·요금 결제자료</u>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법 제1
3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정보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요청받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요청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
가능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이 금지된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756